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강현숙)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 운영 시간, 이용료(안 제1조~제7조)
- 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안 제8조~제10조)
- 안전관리(안 제11조)
-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안 제12조~제14조)
-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 위탁 해지(안 제15조~제1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 본 조례안은

-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1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신체놀이 공간·놀이기구 및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맞벌이가정 등 평일에 놀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자 또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및 어린이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정하였고,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놀이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재정지원, 지도·점검, 위탁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무더위·한파, 호우·대설, 미세먼지 등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아동의 놀이문화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제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1 호
----------	---------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지원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 운영 시간, 이용료(안 제1조~제7조)
- 나. 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안 제8조~제10조)
- 다. 안전관리(안 제11조)
- 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안 제12조~제14조)
- 마.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 위탁 해지(안 제15조~제1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편성, 서울시 운영예산 보조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4. 27. ~ 5. 17.):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놀이공간을 설치하여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신체놀이 공간 제공
2. 영유아의 신체 및 심리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기준	이용료 (영유아)	비 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영유아 1인, 1회 이용시	3,000원  (※ 들봄이용시 2,000원 추가)	· 1회 이용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 주)

※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상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전액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li> <li>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자녀</li> <li>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li> <li>1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li> <li>12.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p>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p>